

# 변경대비표(일반 및 자펀드)

##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클래스 신설	결산	변동성 값 업데이트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 료 인하	수탁보수 및 종류 S 판매보수 인하	자본 시장법	신용 평가 등급
1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	-	-	-	-	-
2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호	-	○	-	-	-	-	-
3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 (주식)	-	○	○	-	-	-	-
4	미래에셋타겟데이트204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	-	-	-
5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	○	○	-	-	○	○
6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 (주식)	-	○	○	-	-	-	-
7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8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9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	○	-	-	○	○
10	미래에셋이머징달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C-P2e	-	-	-	-	-	-
11	미래에셋스마트롱숏공모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C-P2e	-	-	-	-	-	-
12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e, C-P2e	-	-	-	-	-	-
13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A-e	-	-	-	-	-	-
14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	-	-	-	-	-
15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C-Pe, C-P2e	-	-	-	-	○	-
16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P2e	-	-	-	-	-	-
17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e, AG, CG	-	-	-	-	-	-
18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	-	-	-	-	-
19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	-	-	-	-	-
20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	-	-	-	-
21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	-	-	-	-	-
22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C-P2e	○	-	-	-	-	-
23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 간접형)	C-P2e	○	-	-	-	-	-
24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AG, CG	-	○	-	-	-	-
25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A-e, AG, CG	-	○	-	-	-	-

26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	O	-	-	-	-
27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분배형)	C-e	O	O	-	-	O	-
28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O	O	-	-	-	-
29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O	O	-	-	-	-
30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O	O	-	-	-	-
31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O	O	-	-	-	-
32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O	O	-	-	-	-
33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O	O	-	-	-	-
34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O	O	-	-	-	-
35	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O	O	-	-	-	-
36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C-e	O	O	-	-	-	-
37	미래에셋친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C-e	O	O	-	-	-	-
38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C-P2e	O	O	-	-	-	-
39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O	O	-	-	O	-
40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O	O	-	-	-	-
41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2e	O	O	-	-	O	-
42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	-	-	-	A, AG	-	-	-
43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C-e	-	-	A-e	-	-	-
44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C-e	-	-	A-e	-	-	-
45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	C-e	-	-	A-e	-	-	-
46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C-e	O	O	-	O	-	-

**2. 변경 사항:**

- 1) 종류 신설
- 2)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 4)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인하
- 5) 수탁보수 및 종류S 판매보수 인하
- 6)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7)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7년 08월 29일(화)

4. 변경 내용:

1) 종류 신설

펀드명	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미래에셋이머징달리회사채증권투자자신탁1호(H)(채권)	0.18	-	-
미래에셋스마트롱숏공모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0.21	-	-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투자자신탁(채권혼합)	C-e : 0.49, C-P2e : 0.37	-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0.5	선취 : 0.5	30일미만 : 이익금의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3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0.43	선취 : 0.5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C-Pe : 0.06, C-P2e : 0.01	-	-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0.19	-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Pe : 0.32, AG : 0.28, CG : 0.56	<선취> AG : 0.35	-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0.42	-	-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0.4	-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25	-	-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주식)	0.42	-	-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0.36	-	-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0.3	-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A-e : 0.43, AG : 0.60, CG : 0.91	<선취> A-e : 0.50 AG : 0.70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A-e : 0.45, AG : 0.63, CG : 0.91	<선취> A-e : 0.50 AG : 0.70	<A-e, AG>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180일 미만 : 이익금의 30%

			<CG>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0.37	-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혼합)(분배형)	0.49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 식)	0.43	선취 : 0.5	-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 식)	0.43	선취 : 0.5	30일미만 : 이익금의 10%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3	선취 : 0.5	-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3	선취 : 0.5	-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3	선취 : 0.5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3	선취 : 0.5	-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38	선취 : 0.5	30일미만 : 이익금의 10%
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43	선취 : 0.5	30일미만 : 이익금의 10%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 0.43, C-e : 0.65	<선취> A-e : 0.50	-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e : 0.43, C-e : 0.65	<선취> A-e : 0.50	-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 식)	0.46	-	-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0.37	-	-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0.37	-	-
미래에셋퇴직플랜인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0.37	-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0.22	-	-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 형)	0.5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 권-재간접형)(분배형)	0.5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호(채권)(분배형)	0.42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A-e	온라인 투자자
종류C-e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종류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종류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18.64	18.96	2	2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1.17	1.20	5	5
미래에셋타겟데이트204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b>6.27</b>	<b>2</b>	<b>4</b>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2.21	2.64	5	5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16.41	2	2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4.90	20.03	2	2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4.85	14.81	3	3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7.73	17.60	2	2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3.02	12.67	3	3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6.60	6.53	4	4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12.63	12.61	3	3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분배형)	4.11	4.06	5	5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6.98	16.12	2	2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6.10	15.53	2	2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3.22	22.43	2	2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2.07	30.97	1	1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7.14	27.08	1	1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0.19	32.11	1	1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3.04	13.09	3	3
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82	21.08	2	2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2.31	21.70	2	2
미래에셋친디아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8.73	16.88	2	2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7.81	17.64	2	2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8.61	8.23	4	4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97	5.95	4	4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96	5.73	4	4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1.71	1.78	5	5

#### 4)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인하

#####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6.[종류형 구조]	<p><u>&lt;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gt;</u> (종류A) (연 %)</p> <p>1. 운용보수: 0.15</p> <p><b>2. 판매보수: 0.75</b></p> <p>3. 신탁보수: 0.03</p> <p>4. 사무관리보수: 0.02</p> <p><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b></p> <p>(종류AG) (연 %)</p> <p>1. 운용보수: 0.15</p> <p><b>2. 판매보수: 0.52</b></p> <p>3. 신탁보수: 0.03</p> <p>4. 사무관리보수: 0.02</p> <p><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b></p>	<p><u>&lt;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gt;</u> (종류A) (연 %)</p> <p>1. 운용보수: 0.15</p> <p><b>2. 판매보수: 0.70</b></p> <p>3. 신탁보수: 0.03</p> <p>4. 사무관리보수: 0.02</p> <p><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b></p> <p>(종류AG) (연 %)</p> <p>1. 운용보수: 0.15</p> <p><b>2. 판매보수: 0.49</b></p> <p>3. 신탁보수: 0.03</p> <p>4. 사무관리보수: 0.02</p> <p><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5% 이내</b></p>

	<p><b>&lt;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gt;</b> (종류A-e) (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보수: 0.30</li> <li><b>2. 판매보수: 0.25</b></li> <li>3. 신탁보수: 0.04</li> <li>4. 사무관리보수: 0.02</li> <li><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25% 이내</b></li> </ol> <p><b>&lt;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gt;</b> (종류A-e) (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보수: 0.30</li> <li><b>2. 판매보수: 0.48</b></li> <li>3. 신탁보수: 0.04</li> <li>4. 사무관리보수: 0.02</li> <li><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60% 이내</b></li> </ol> <p><b>&lt;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gt;</b> (종류A-e) (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보수: 0.30</li> <li><b>2. 판매보수: 0.42</b></li> <li>3. 신탁보수: 0.04</li> <li>4. 사무관리보수: 0.02</li> <li><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49% 이내</b></li> </ol>	<p><b>&lt;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gt;</b> (종류A-e) (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보수: 0.30</li> <li><b>2. 판매보수: 0.15</b></li> <li>3. 신탁보수: 0.04</li> <li>4. 사무관리보수: 0.02</li> <li><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15% 이내</b></li> </ol> <p><b>&lt;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gt;</b> (종류A-e) (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보수: 0.30</li> <li><b>2. 판매보수: 0.30</b></li> <li>3. 신탁보수: 0.04</li> <li>4. 사무관리보수: 0.02</li> <li><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5% 이내</b></li> </ol> <p><b>&lt;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gt;</b> (종류A-e) (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보수: 0.30</li> <li><b>2. 판매보수: 0.30</b></li> <li>3. 신탁보수: 0.04</li> <li>4. 사무관리보수: 0.02</li> <li><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5% 이내</b></li> </ol>
<p>제2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b>&lt;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gt;</b> (종류A) (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보수: 0.15</li> <li><b>2. 판매보수: 0.75</b></li> <li>3. 신탁보수: 0.03</li> <li>4. 사무관리보수: 0.02</li> <li><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b></li> </ol> <p>(종류AG) (연 %)</p>	<p><b>&lt;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gt;</b> (종류A) (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용보수: 0.15</li> <li><b>2. 판매보수: 0.70</b></li> <li>3. 신탁보수: 0.03</li> <li>4. 사무관리보수: 0.02</li> <li><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b></li> </ol> <p>(종류AG) (연 %)</p>

	<p>1. 운용보수: 0.15  <b>2. 판매보수: 0.52</b>  3. 신탁보수: 0.03  4. 사무관리보수: 0.02  <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b></p> <p><b>&lt;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gt;</b>  (종류A-e) (연 %)  1. 운용보수: 0.30  <b>2. 판매보수: 0.25</b>  3. 신탁보수: 0.04  4. 사무관리보수: 0.02  <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25% 이내</b></p> <p><b>&lt;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gt;</b>  (종류A-e) (연 %)  1. 운용보수: 0.30  <b>2. 판매보수: 0.48</b>  3. 신탁보수: 0.04  4. 사무관리보수: 0.02  <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60% 이내</b></p> <p><b>&lt;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gt;</b>  (종류A-e) (연 %)  1. 운용보수: 0.30  <b>2. 판매보수: 0.42</b>  3. 신탁보수: 0.04  4. 사무관리보수: 0.02  <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49% 이내</b></p>	<p>1. 운용보수: 0.15  <b>2. 판매보수: 0.49</b>  3. 신탁보수: 0.03  4. 사무관리보수: 0.02  <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5% 이내</b></p> <p><b>&lt;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gt;</b>  (종류A-e) (연 %)  1. 운용보수: 0.30  <b>2. 판매보수: 0.15</b>  3. 신탁보수: 0.04  4. 사무관리보수: 0.02  <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15% 이내</b></p> <p><b>&lt;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gt;</b>  (종류A-e) (연 %)  1. 운용보수: 0.30  <b>2. 판매보수: 0.30</b>  3. 신탁보수: 0.04  4. 사무관리보수: 0.02  <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5% 이내</b></p> <p><b>&lt;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gt;</b>  (종류A-e) (연 %)  1. 운용보수: 0.30  <b>2. 판매보수: 0.30</b>  3. 신탁보수: 0.04  4. 사무관리보수: 0.02  <b>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5% 이내</b></p>
--	---	--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보수)	<p><u>&lt;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gt;</u> (종류A)</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5</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7.5</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3</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p>(종류AG)</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5</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5.2</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3</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p><u>&lt;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gt;</u> (종류A-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2.5</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4</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p><u>&lt;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gt;</u> (종류A-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4.8</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4</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p><u>&lt;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gt;</u> (종류A-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4.2</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4</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p><u>&lt;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gt;</u> (종류A)</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5</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7.0</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3</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p>(종류AG)</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5</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4.9</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3</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p><u>&lt;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gt;</u> (종류A-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1.5</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4</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p><u>&lt;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gt;</u> (종류A-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3.0</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4</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p><u>&lt;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gt;</u> (종류A-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li> <li><b>2. 판매보수: 연 1000분의 3.0</b></li> <li>3. 신탁보수: 연 1000분의 0.4</li> <li>4. 사무관리보수: 연 1000분의 0.2</li> </ol>
제40조(판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p>수수료)</p>	<p>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b>&lt;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gt;</b></p> <p><b>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10.0 이내</b></p> <p><b>2. 종류AG 수익증권 : 1000분의 7.0 이내</b></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b>&lt;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gt;</b></p> <p><b>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3.0 이내</b></p> <p><b>2. 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2.5 이내</b></p> <p><b>&lt;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gt;</b></p> <p><b>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7.0 이내</b></p> <p><b>2. 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6.0 이내</b></p> <p><b>&lt;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gt;</b></p> <p><b>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7.0 이내</b></p> <p><b>2. 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4.9 이내</b></p>	<p>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b>&lt;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gt;</b></p> <p><b>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5.0 이내</b></p> <p><b>2. 종류AG 수익증권 : 1000분의 3.5 이내</b></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b>&lt;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gt;</b></p> <p><b>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3.0 이내</b></p> <p><b>2. 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1.5 이내</b></p> <p><b>&lt;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gt;</b></p> <p><b>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7.0 이내</b></p> <p><b>2. 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3.5 이내</b></p> <p><b>&lt;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gt;</b></p> <p><b>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7.0 이내</b></p> <p><b>2. 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3.5 이내</b></p>
-------------	---	--

5) 수탁보수 및 종류S 판매보수 인하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6.[종류형 구조]	[아래참조 1]	[아래참조 2]
제2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아래참조 1]	[아래참조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보수)	[아래참조 1]	[아래참조 2]

[참조 1] 변경 전 보수표(%)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30	0.50	<u>0.04</u>	0.02
종류 A-e	0.30	0.35	<u>0.04</u>	0.02
종류 C	0.30	0.85	<u>0.04</u>	0.02
종류 S	0.30	<u>0.20</u>	<u>0.04</u>	0.02

[참조 2] 변경 후 보수표(%)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30	0.50	<u>0.03</u>	0.02
종류 A-e	0.30	0.35	<u>0.03</u>	0.02
종류 C	0.30	0.85	<u>0.03</u>	0.02
종류 S	0.30	<u>0.15</u>	<u>0.03</u>	0.02

6)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8.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 <sup>1</sup>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u>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u> 및 법 시행령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u>기업어음증권</u>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

<sup>1</sup>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p>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b><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b></p>	<p>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b><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b></p>
<p><b>제2부. 8. 나. 투자제한.</b> <b>&lt;집합투자기구의 투자&gt;<sup>2</sup></b></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b><u>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u></b>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p>

<sup>2</sup>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b>제 80조 제10항</b> 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b>제 80조 제11항</b> 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5부. 1. 가. 집합투자자 총회 등 /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사항	<신설>	<b>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b>
제5부. 3. 가. 정기보고서 / (2)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b>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b>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b>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제1호의</b>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5부. 3. 나. 수시공시 / (1)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신설>	<b>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b>
제5부. 3. 나. 수시공시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2)수시공시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u>단순한 자구수정 등</u>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u>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u>
제5부. 3. 나. 수시공시 / (3)집합투자 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u>주주 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u>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u>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u>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sup>3</sup>	2.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u>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u>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sup>4</sup></u> ,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	2.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u>기업어음증권</u>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u>

<sup>3</sup>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sup>4</sup>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해당됨.

	<p>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b>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b></p>	<p><b>가 발행한 채권</b>,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b>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b></p>
<p><b>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sup>5</sup></b></p>	<p>4. 투자신탁자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p>	<p>4. 투자신탁자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b>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b>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p>

<sup>5</sup>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p>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b>제80조 제10항</b>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b>제80조 제11항</b>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b>제43조(신탁 계약의 변경)</b></p>	<p>① ~ ③ (생략)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b>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b>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b>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b>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49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b></p>	<p>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b>투자신탁재산 총액</b>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b>투자신탁 순자산총액</b>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b></p>	<p>① ~ 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b>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b></p>	<p>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b>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b></p>



		<p>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p> <p>·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	--	---

7)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8.가. 투자대상 <채권> <sup>6</sup>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b>취득 시</b>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제2부.8.가. 투자대상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 <sup>7</sup>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b>취득 시</b>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b>취득 시</b>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sup>6</sup>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sup>7</sup>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집합투자계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17조(투자 대상자산 등) <sup>8</sup>	<p>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p>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b>취득 시</b>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b>취득 시</b>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sup>9</sup>	<신설>	<p><b>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b></p>

<sup>8</sup>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sup>9</sup>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미래에셋자산운용(주)